예 산 총 칙

2025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1,471,188	18,644,136
일반회계	594,707,994	17,841,240
특별회계	26,763,194	802,896
기타특별회계	26,763,194	802,896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5,051,269	751,538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	3,320	10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47,535	25,426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	809,070	24,272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	52,000	1,560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5,170,200천원으로 그 중 일반예비비는 1,000,000천원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4,170,2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17,841,24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